

1. 개정이유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있다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법률 제17899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정의(안 제3조의2)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정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도시철도차량으로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철도차량
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으로 철도안전법 제75조제5항제2항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철도차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u> <u>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u> <u>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u> <u>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u> <u>다.</u>
<u><신 설></u>	1. <u>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u> <u>약을 체결한 철도차량으로 철</u> <u>도안전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u> <u>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u> <u>발급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u> <u>된 철도차량</u>
<u><신 설></u>	2. <u>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u> <u>약을 체결한 철도차량으로 철</u> <u>도안전법 제75조제5항제2호에</u> <u>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u> <u>부터 25년이 경과된 철도차량</u>